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69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엄태영 · 박덕흠 · 배준영  
김상훈 · 진종오 · 이만희  
이종배 · 이상휘 · 서천호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 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인구부

제4장에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인구부) 인구부장관은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인구부장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인구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인구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은 인구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인구부장관의 행위 또는 인구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인구부장관)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구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인구부, 인구부장관, 인구부 소속 공무원 또는 인구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p> <p>1. ~ 19. (생 략) <u>&lt;신 설&gt;</u></p> <p>② · ③ (생 략) <u>&lt;신 설&gt;</u></p>	<p>제29조(행정각부) ① ----- ----- -.</p> <p>1. ~ 19. (현행과 같음) <u>20. 인구부</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49조(인구부) 인구부장관은 인 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 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조정·평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p>